

2026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6급 이하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장애인 구분 모집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해 군 참 모 총 장

군무원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공고문에 기재된 응시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원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 내용(응시자 제출서류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국방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주관 2026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육군·해군(해병대)·공군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접수 가능
- 일반모집(해군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26-6호)과 장애인 구분모집간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가 확인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개인별 입력자료(성명, 연락처,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자격·면허증, 장애인 취득정보 등)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 관련 문의 :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 042-553-1293, [군내 전화] 910-1293
※ 전화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09:00~11:00), 오후(13:30~17:00)

1

채용예정인원 [43명]

채용직급/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직렬	계급	인원			
행정	9급	14	• 장애인 구분 모집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군수	9급	5	• 장애인 구분 모집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시설	9급	1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전기	9급	5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전자	9급	2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사이버	9급	1	• 장애인 구분 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사이버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증 소지자	전국	수시
유도무기	9급	3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탄약	9급	2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선체	9급	3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합정기관	9급	7	• 장애인 구분 모집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전국	수시

※ 공개경쟁채용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 2】** 참고

※ 직급별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6. 7. 3.)까지 취득(최종합격)하여야 함.

가. 공통 필수자격

2026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6. 9. 18.)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법원에서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
-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선거범죄자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자
- 「병역법」 제76조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 등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 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 * 단,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지원)할 수 없음.

다.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 1)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가능)한 자
- 2) 채용 직급별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 필수 직렬 (10개)
 -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응시 자격증·면허증 현황은 붙임 #2 참조)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등

* 공통/공채 응시자격 포함 장애인 구분모집 추가요구 사항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6. 4. 29.)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외 다른 직렬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 접수 불가)
- 4)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앞, 뒤),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중 1부를 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 '26. 5. 6.(수) ~ '26. 5. 8.(금)

[제출기간 내 우체국(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3

시험 일정

구 분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공개 경쟁 채용	4.23.(목) ~ 4.29.(수) * 4.29.(수) 18:00 마감	7. 4.(토) * 필기시험 장소공고 : 6.18.(목)	8. 10.(월) *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8.10.(월) ~ 8.14.(목)	9.15.(화) ~ 9.18.(금) * 면접시험 장소공고 : 8. 27.(목)	9. 30.(수)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공지사항'에 게시)

※ 향후 시험장소,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홈페이지 (www.navy.mil.kr)**에서만 공지함.

*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채용공고】 → 【공지사항】

4 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나. 필기시험

- 1) 시험과목 : 직급별 필기시험 세부 과목은 **【붙임 1】** 참조
※ 9급 과목 : 5과목(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2)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3)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4)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150%) 범위 내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5) 필기시험 응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포, 화성, 포항, 제주
※ 응시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가능(원서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1) 시험주관 : 해군본부
- 2)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3) 합격결정 기준
 - 면접평가요소 5개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나. 최종합격자 결정

- 1) 필기시험 점수(75%)와 면접시험 점수(25%)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2)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3)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국방보안업무훈령)” 및 “채용신체검사(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될 수 없으며, 경채의 경우 최초 공고된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가산복무 등 전역·퇴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이 불가합니다.

5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 1) 접수기간 : '26. 4. 23.(목) 09:00 ~ 4. 29.(수) 18:00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26. 4. 29.(수)은 18:00에 마감)
 - ※ 지정된 마감시간('26. 4. 29.(수) 18:00 정각)까지 원서등록 및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시간(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 3) 접수방법 ※ 모바일 환경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불가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지원서작성】→【전형료 결제】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출력은 '26. 5. 6.(수) 10시 이후 가능
 - 지원서 작성 시 사진파일(JPG, JPEG) 필요, 파일용량 100KByte 미만,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면(3.5×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
 - * 본인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발생
 - * 응시수수료 결제를 위해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원서접수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해야 원서제출이 최종 완료
 - *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계급 수정(예: 9급 → 7급 / 7급 → 9급) 시 해군본부로 연락
 - '26. 4. 29.(수) 18:00 정각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이체수수료 제외)를 환불함.(1~2개월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 면제대상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10. 제출서류」(p.1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시)에서만 필기시험 응시
 - * 필기시험 응시지역(7개 지역) : 창원, 동해, 평택, 목포, 화성, 포항, 제주
- 6) 응시원서 작성한 결과는 [지원서 확인]에서 확인하고, 원서접수 완료 여부는 [전형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응시수수료 결제 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 * 기술지원 및 INlpay 설치문의 : 1588-4954(KG 이니시스 고객센터)

나. 원서접수 취소

- 1) 취소기간 : '26. 4. 30.(목) 18:00까지
- 2) 취소방법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전형결과조회】→【원서취소】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응시번호 확인 및 응시표 출력

- 1) 응시표 출력 : '26. 5. 6.(수) 10:00부터
- 2) 출력방법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 →【응시표 출력】**
 - * [군무원채용관리] 상단 / ** [군무원채용관리] 좌측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필기시험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2) 해군, 해병대응시자는 지원서 작성 시 **모집구분**을 잘 확인한 후 착오없이 지원 바랍니다.
- 3) 원서접수 시 선택한 필기시험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4) 원서접수 기간 종료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5) 응시자는 원서접수 간 기본사항(연락처 등), 장애인 등록정보,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록정보, 영어·한국사 성적정보, 가산점·응시필수 자격·면허증 취득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6) 합격자(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응시표 출력 보관)
- 7)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 생성됩니다.
- 8) 각종 증명서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처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9) 국방부,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 주관 시험에서는 **2개 이상 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10)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서류제출 기간 [5. 6.(수)~5. 8.(금)]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과거 원서 접수한 정보 (영어·한국사 성적, 자격·면허 취득 번호 등)는 해당 연도 채용시험 종료 후 파기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12) 원서접수 종료일 임박 시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 수정 입력

1) 수정입력 사유

-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을 등록할 경우
-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응시/가산 자격증·면허증 취득중인 응시자
※ 원서접수 시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응시/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중”으로 접수하고, 이후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 취업지원대상 및 의사상자 등 자격취득 중인 경우
※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 의사상자 등 자격 취득진행 중이어서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란 “취득중”으로 접수하고, 이후 필기시험 전일(’26. 7. 3.)까지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2) 수정입력 기간 : ’26. 7. 4.(토) 09:00 ~ 7. 8.(수) 18:00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기간 내 중단시간 없음

3) 수정입력 방법 :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 → 【군무원채용관리】 → 【지원서작성/확인】 → 【지원서 수정】

4) 수정입력 항목

- 가)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종류, 시험점수(등급), 시험일자 등
- 나)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등
- 다) 취업지원대상/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산)점 비율

※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전일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에 미입력으로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6 공채시험 응시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7급	9급
토익 (TOEIC)	기준점수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플 (TOEFL)	기준점수	IBT 54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PBT 319점 이상	PBT 292점 이상
텝스 (TEPS)	기준점수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500점 이상
	청각장애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10.제출서류-나. 공개경쟁채용-2)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p.17~1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부터 TOEFL(IBT) 점수체계가 변경되었으나, 기존 점수체계에 따른 점수도 함께 표기되므로 기존 점수체계를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가) 20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나) 202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사이트 주소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gongmuwon.gosi.kr)
- 대상 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사전등록 방법 : 통합채용포털사이트(career.gosi.kr) → 어학성적사전등록
→ 어학성적 사전등록 신청/확인 → 사전등록
- 사전등록 시한 :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사전등록 기간
 - 상시등록 :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2024년 이전 응시한 플렉스(FLEX)
 - 정기등록(매월 1~15일/16~31일) : 토플(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TOEIC),
2025년 이후 응시한 플렉스(FLEX)
 - * 정기시험 등록은 사전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야 가능
- 주의사항
 -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경과 시, 성적조회가 불가하여 사전등록 할 수 없음
 -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삭제 후 재등록이 되지 않음

라)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각 군 포함)·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4급 이상

※ 2020년 5월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체계 개편에 따른 시험종류의 변동(초·중·고급 3종 → 기본·심화 2종)과 상관없이 기준(인증)등급을 그대로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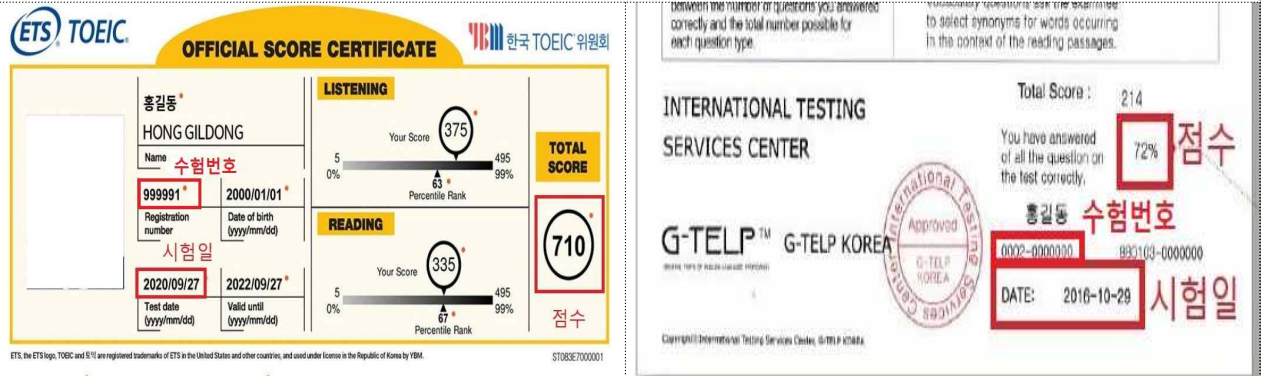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다. 시험성적 입력 방법

- 1) 영어성적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성적, 시험일자,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입력하여야 함.

- ※ 입력 정보 : 시험종류, 시험일, 시험점수, 영문성명(해당시), 수험번호
- * 수험번호는 영어시험 시행기관에 시험 응시할 때 부여받은 것을 말함.
 - * 토익/토플 숫자 6자리, 토플 숫자 16자리, 지텔프 숫자 11자리, 플렉스 숫자 10자리



- * 예시) 토익 성적표 시험일, 점수, 수험번호 입력
- * 예시) 지텔프 성적표 시험일, 평균점수, 수험번호 입력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한 자도 반드시 성적을 입력해야 함

- 2) 한국사의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의 인증등급, 취득일자,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한국사 성적 입력정보 : 급수(성적), 시험일(=취득일자), 인증번호(하이픈 '-' 필수입력)

- 3) 영어성적 및 한국사 기준점수 준비 중인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시험 "취득중"으로 우선 접수하고, 기준점수 취득 후 수정입력기간(7.4. 09:00 ~ 7.8. 18:00까지)에 취득한 영어성적 및 한국사 정보를 반드시 수정 입력해야 인정됨.

※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4) 성적 오기입 등으로 인하여 해당시험 시행기관에서 조회가 안 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시험일자, 점수, 인증번호 등 성적표에 기재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라. 시험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자격증 필수 직렬

가.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0개)

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응시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6. 7. 3.)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자격증 세부내역은 **【붙임 2】** 참조

나. 자격증 입력 방법 : 자격증 종류, 발행기관, 자격증 번호, 취득일자(합격연월일)

※ 자격(면허)증은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번호 : 예)01234567890A(숫자 11자리, 마지막 알파벳 대문자)

* 해양수산부 자격증 번호 : 예)AA-A1-0123(영문 2자리 - 영문, 숫자 - 숫자 4자리)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u>1개만 적용</u>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u>각각 적용</u> •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u>하나만 가산</u>
응시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u>가산 특전에서 제외</u>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2) 가점비율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3) 적용범위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 의사상자 등 가점은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인 시험에 적용
- 4) 선발범위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공개경쟁채용 시험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1) 가산 적용대상 직렬(가산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행정(장애구분채용), 군수(장애구분채용), 토목, 건축, 시설, 환경,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등 34개 직렬

- ※ 가산대상 자격·면허증 세부내역은 **【붙임 2】** 참고
- ※ 가산되는 자격·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

- 2) 적용대상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한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사서, 사이버,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은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3) 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라. 가산점 적용대상자 입력 방법

-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원서 작성 시 가점비율 선택(10% 대상, 5% 대상, 3% 대상), 취득일, 보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취득일,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 적용대상자 입력 정보 : **가점비율, 취득일, 증서번호**

2)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응시원서 작성 시 취득(합격)일, 자격증명칭,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산되는 자격증·면허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응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입력하기 바랍니다.

※ 자격증·면허증 입력정보 : 취득일, 자격증명,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번호 : 예)01234567890A(숫자 11자리, 마지막 알파벳 대문자)

* 해양수산부 자격증 번호 : 예)AA-A1-0123(영문 2자리 - 영문, 숫자 - 숫자 4자리)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증 번호 : 예)21-123456(숫자 2자리 - 숫자 6자리)

3) 응시자가 입력한 내용이 오기입으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조회가 안 될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응시/가산 자격증·면허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기 바랍니다.

마.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시행 전일(26.7.3.)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가산 자격증·면허증을 소지(취득)한 경우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산 자격증·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

2) 개명(改名)자 조치사항 : 개명(改名)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되었거나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했다면, 해당 기관에 '성명 정정을 신청'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관으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 또는 자격증·면허증 취득의 진위 여부 확인 시 성명 불일치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됨.

3)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5) 응시원서 접수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점되지 않음

6) 취업지원대상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과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7) 응시원서 접수 또는 수정입력 기간에 입력한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만 유효하게 인정하며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또는 수정입력 기간 이후 가산점 불일치자 중 증명자료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9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해당자에 한함)

가. 편의제공 신청 대상자

-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단, 해군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니더라도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임신부 및 기타 일시적 질병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도 편의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하면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편의지원 제공은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 편의지원 신청자의 시험장 편성 및 시험물품 준비를 위해 사전 파악/접수 필요

나. 신청방법

- 1) 서류 제출기간 : '26. 5. 6.(수) ~ 8.(금)
 - ※ 반드시 제출 기간의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이 찍혀있어야 함.
(제출 기간 이전 또는 이후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음)
- 2)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 제출 (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불가)
 - **【붙임 3】** 양식에 주소, 제출구분, 직렬/계급, 응시번호, 응시자 등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
 -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33.5cm) 준수

10

제출서류

- ① 제출기간 : '26. 5. 6.(수) ~ 5. 8.(금) ※ 반드시 제출 기간의 소인이 찍혀있어야 함.
- ② 제출방법 : 등기우편(직접방문 또는 택배를 통한 서류제출 불가)
 - **【붙임 3】** 서식에 주소, 제출구분, 직렬/계급, 응시번호, 응시자 등을 기재 후 인쇄하여 **규격봉투** 겉면에 부착
 -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33.5cm) 준수
- ③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앞

가. 응시자 공통(해당자)

- 1)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자 *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원본, 그 외 서류는 사본 가능
【별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
- 2)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 3)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장애인복지카드(앞/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중 1부
- 4)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포함) :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 등 발행 증명서 원본 1부
- 5) 개명(改名)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나. 공개경쟁채용

1)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구 시 별도 제출)

-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면허증/가산 자격증, 취업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등을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적표,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을 사전에 준비/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요구 후 응시자의 입증서류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해당시험 무효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완화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적용대상자 (해당자에 한함)

가) 적용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나) 제출서류 등 안내

①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① 면제 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②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진술
* 장애 정도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에 따라 검사
- ③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라 청력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② 두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30% 이하인 사람으로서
- ③ 군무원 임용시험의 어학 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 신청방법 및 절차

- 원서접수 시 장애인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기간 내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라) 유의사항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1)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응시원서 상의 허위 기재 또는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5)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6)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8) 최초 임용된 지역(부대)에서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부대)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 9) 개명(改名)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등록·결정되었거나 자격·면허증을 취득했다면, 증빙자료(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제출 바랍니다.
- 10) 원서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 시 해군본부 공개채용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 1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당해 시험에서만 응시서류로 활용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12)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13) 해군본부 군무원정책과 공개채용담당(☎ 042-553-1293 / 09:00 ~ 11:00, 13:30 ~ 17:00)

11 추가면접 / 합격제도 안내

가. 추가면접

6급 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5항에 따라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추가합격

공채 및 경채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p.21)

#2.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p.22)

#3. 서류제출 시 서류봉투 겉면 부착(p.23)

해 군 본 부

【붙임 1】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단, 공통과목은 영어 및 한국사이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 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군수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시설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전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사이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정보보호론, 네트워크 보안
유도무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선체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함정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붙임 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 면허증

직렬 \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행 정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운용사
군 수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운용사
시 설	공조냉동기계, 가스, 기계안전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산업안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배관, 산업안전,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배관, 위험물, 가스
전 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자동화설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카드, 전자계산기,
사이버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유도무기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	자동화설비,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자동화설비, 정밀측정, 전자, 전기, 광학, 무선설비
탄 약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위험물, 전자, 전기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자동화설비,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선 체	조선, 용접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	조선선체, 조선의장, 용접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피복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건축목공, 배관
함정기관	조선, 차량, 1~2급기관사	자동차정비	조선선체, 조선의장,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조선, 자동차정비, 5~6급기관사	

- ※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하되 응시등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 장애인 구분모집 또는 지역 인재 추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한 경우,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의 응시 및 가산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때,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본다.

【붙임 3】

보내는 사람

우)

응시구분 : 공개경쟁채용(장애인 구분모집)

제출구분 : 장애편의지원 기타서류

* 해당 부분에 체크할 것.

응시직렬/계급 :

응 시 번 호 :

응시자(연락처) :

받는 사람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군무원정책과

<해군 군무원 채용 제출서류 재증>

공개채용담당 앞